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 세 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9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1.

발 의 자 : 최세진, 강선영, 한상욱,
신찬호, 정장훈, 박주선,
고찬양, 김순옥, 홍재희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청년들의 구직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 신설(안 제12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

나. 협조부서 : 일자리정책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8. ~ 9. 1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“강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스터디카페(독서실) 이용료
2. 자격시험(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료
3.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(면접정장 대여, 사진촬영, 메이크업 등)
4. 그 밖에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대상·요건·절차·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청년정책 시행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 <u>강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청년정책 시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강서구</u> <u>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-----.</p> <p>제12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스터디카페(독서실) 이용료</u> 2. <u>자격시험(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료</u> 3. <u>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(면접정장 대여, 사진촬영, 메이크업 등)</u> 4. <u>그 밖에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</u> <p>④ <u>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대상·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

현행	개정안
	<u>요건·절차·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 다.</u>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9조(청년 능력개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·재능·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